

<붙임 2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부수업무 수행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여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
자 사업목적을 추가함.

2. 주요 변경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목적	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1. 경영컨설팅업 1.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	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)에 의한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1. 경영컨설팅업 1. 자본시장법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한 업무 1. 부동산의 취득, 관리, 처분 및 개발에 관한 자문업무 1.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